삼정 KPMG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October 23 2023**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프랑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관련 입법 초안 발표

2023년 9월 27일,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EU Minimum Tax Directive)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Pillar 2 모델 규정 (OECD's Pillar Two Model Rules)을 시행하기 위한 2024 재정 법안(2024 Finance Bill)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저한세 규정은 프랑스 법인세 제도에 포함되며, 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EU Minimum Tax Directive)와 후속적으로 발간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OECD/G20 Inclusive Framework)의 내용을 준용할 것입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IIR은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UTPR은 IIR이 처음 적용된 사업연도 이후 1년 후, 즉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IIR 및 UTPR 적용 연기(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 제50조)를 선택한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UTPR도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지 최저한세 추가세액 (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프랑스 DMTT는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IIR 및 UTPR 시행을 위하여, DMTT는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으로 적용됩니다. DMTT는 프랑스 소재 구성기업들(Constituent Entities, "CEs")의 총 글로벌최저한세이익(GloBE income) 대비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비율에 따라 프랑스 현지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
- ***세이프하버 규정:*** 법안 초안은 국가별보고서(CbyC Reporting) 및 UTPR의 세이프하버 전환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초안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세이프하버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i.e. QDMTT를 적용하는 타 국가와 관련해 IRR 및 UTPR 추가세액은 프랑스내에서 0으로 간주됨). 법안 초안은 프랑스 현지 구성기업들이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재무회계기준 또는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정보를 산출할 경우, OECD 주석서에 따른 최저한세 면제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세이프하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OECD 지침서:*** 법안 초안은 OECD 모델 규정(OECD Model Rules) 및 유럽연합 지침서(EU Directive rules)를 적용한 OECD 행정지침(OECD Administrative Guidance)상의 특정 항목들(예: 특정 조건 하에 채무 면제 관련 소득 제외 선택, 지분 소득 포트폴리오 포함 선택 및 마이너스 법인세 초과 비용(Excess Negative Tax Expense)의 이월 적용)을 포함합니다.
- ***신고 납부기한:*** 각 프랑스 현지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처음 시행되는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GloBE 정보 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세액 납부 의무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GloBE 정보 신고서 제출 의무는 다른 구성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외국 구성기업이 GloBE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 초안에 따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그룹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현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현지 그룹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GloBE 정보 신고서 서식 및 련지 신고서 서식을 포함한 행정 요건을 더욱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입법 조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과태료:*** GloBE 정보 신고서 또는 현지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EUR 1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EUR 50,00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과태료 총액은 회계 연도 당 EUR 1,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부 0417 (2023.07.18)**

**제목: 쟁점토지 취득권리에 대한 시가 산정시 감정목적이 상이한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외 종합건설업 법인으로, 2020. 7. 30. 토지(○○○ 항만재개발 2단계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상업용지, 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수권리(이하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법인인 CCC㈜(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이하 "사업시행사")로부터 취득함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2020.12.21. 특수관계법인인 DDD㈜(이하 "매수법인")에 OOO원(AAA감정평가법인과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이하 "쟁점양도가액")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하고 해당 양도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202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매수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BBB회가 EEE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3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제기

### 2) 쟁점

- 쟁점토지 취득권리에 대한 시가 산정시 감정목적이 상이한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 --- | --- |
|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음**<br>1) 쟁점거래 거래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매매거래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에 근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거래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br>2) 쟁점거래일 6개월 전에 쟁점토지는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사 간에 거래된 바 있는데, 해당 거래가액은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됨<br>-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였어도, 쟁점거래로 가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EEE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평가액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법인세법」제 52 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br>1)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다수 판례가 존재함<br>2) E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공신력이 인정되는 감정기관이 쟁점토지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쟁점토지의 제반가격 형성요인과 그 격차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평가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br>3) 청구법인은 계약 체결 전 EEE・AAA・BBB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배제하고 AAA・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자산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

| | |
|---|---|
| **시가감정가액과 담보감정가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음**<br>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에서는 가치다원론을 인정하고 있고「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치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함<br>- 가치다원론이란 가치를 보는 관점이나 상황, 용도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시장가치와 담보가치로 구분됨. 담보가치란 금융기관 등이 대출에 따른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담보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산정한 평가가치를 말하며 시장가치는 일반 거래에 있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임.<br>- 시장가치와 담보가치는 비록 평가의 대상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평가목적의 차이로 인해 개념 및 평가중점, 시장성 판단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차이를 보이게 됨<br>- 「법인세법」 제89조의 시가는 합리적 경제주체 간의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채권·채무를 원인으로 한 주관적 처분가격을 반영한 담보감정가액은 특정한 목적에 기인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AAA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BBB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적정시세(이하 "일상 2 토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감정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br>1) AAA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사전견적 용역제안서상 감정가액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유사한 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가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br>2) AAA 및 BBB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바와 같이 2개 감정평가서는 그 감정가액이 일상2토지의 적정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을 여지가 커 보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요인·그 밖의 보정요인, 매매사례로 무엇을 적용하는지 등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담보목적 감정평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목적 감정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점이며, 따라서 AAA·BBB·EEE감정평가법인의 3개 감정평가액 중 EEE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만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 4) 판단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산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시가의 추정 내지 파악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참조)
- 2019년 12월부터 쟁점거래일인 2020.12.21. 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여섯 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EEE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은 이전 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남
- 쟁점감정가액은 회수할 채권(대출금)에 대한 담보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산정되었던 가액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담보가치 평가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쟁점토지의 시가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03 관세

### 한국-UAE CEPA 협상 타결 발표

**1. 개요**

2023년 10월 14일 한국-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자 한국의 24번째 FTA로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증가, 원유 수급 안정 등 UAE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UAE CEPA 내용 상세**

10월 14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이 한국-UAE CEP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에 합의한 바,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안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UAE 양허 예정 주요 품목

-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협정 발효 후 10년간 단계적 철폐 (5% → 0%) 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관세 완전철폐 예정에 따라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럽,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국 양허 예정 주요 품목

- 한국-UAE CEPA를 통해 원유를 포함한 석유화학제품 등이 협정 발효 후 10년간 단계적 철폐 (원유 : 3% → 0%, 나프타 : 0.5% → 0.25%) 될 예정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드문 바, 금번 원유 관세 철폐를 통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UAE의 서비스시장 개방

-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콘텐츠, 건설 분야를 개방하기로 한 바, 이는 UAE가 기존 체결한 타 CEPA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의 경우 UAE의 최초 개방입니다.
- UAE는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UAE에서 한국 게임에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약 69달러로 중동 평균인 38.5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는 바, 최근 중국 등 경쟁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의 포함.

-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이 체결한 FTA 중 바이오 경제 분야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며, 세계 최초 모델로서 해당 부속서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육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3. 시사점

한국-UAE CEPA 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對 UAE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로 UAE 시장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UAE 를 거점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와 교역을 넓힐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당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